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년부 조사·심리 시 고려사항 추가 등〉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 관	2
2. 소년부 조사·심리 시 고려사항 추가	12
3.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 제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9조의4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추가하고(안 제12조),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u>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u> ,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 ----- ----- -----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 <u>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u> ,----- ----- -----.
<신설>	제49조의4(전문가의 의견 조회)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u>

	<u>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u>
--	---

나.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조사·진단

1) 소년법의 특징

-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¹⁾²⁾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수행하는 소년사건 심판 절차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함.

< 소년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소년법의 목적, 소년 및 보호자의 정의
제2장	보호사건	보호의 대상,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보호처분 등
제3장	형사사건	형사사건의 심리 및 형사처벌에서의 특례 등
제3장의2	비행의 예방	법무부장관의 비행예방정책
제4장	벌 칙	보도금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동법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그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이므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처우와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년의 품성, 환경 등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규정하고 있음(제12조 등).

1)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점에서 「소년법」은 반사회적 소년의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후견주의적 법률로 이해 되고 있음. 오영근 외 15인, 소년법, 박영사 (2021), 13-18.

2) 소년사건과 소년에 대한 조사·진단

- 「소년법」상의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뉘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구분은 그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나 반사회적 비행행위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고(제2조),³⁾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형사처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라야 부과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9조),⁴⁾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국한됨.

3) 여기서 ‘19세 미만’ 요건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동법에 따른 보호처분 시(제38조), 또는 형사처분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 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4)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 반면, 보호처분은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더 다양함(「소년법」 제4조제1항).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⁵⁾,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임.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은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우범소년)이나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범죄소년)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⁶⁾

5) 같은 항 제2호 등에 비추어 14세 이상일 것이 요구됨.

6)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부과하려면 그 범죄소년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유책성이 필요하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유책성이 불필요하다고 이해됨.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2014), 34-35.

○ 소년의 유형에 따라 소년사건의 절차가 달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년에 대한 조사·진단도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① 범죄소년은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대상이므로 경찰의 수사 및 조사 대상이 되고,⁷⁾ 조사 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음.⁸⁾

경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⁹⁾¹⁰⁾ 검사는 일반절차에 따라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47조),¹¹⁾ 소년사건절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선도 등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이때 그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을 위하여 소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소년법」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¹²⁾

7)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지니므로, 범죄소년에 대한 수사 역시 기본적으로는 경찰을 거침.

8)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 표준규칙안」(이하 소년업무표준규칙안)을 토대로 각 시·도경찰청이 제정한 규칙안에 따라 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1조는 전문 지식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1조(비행소년 선도) 경찰관은 비행소년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 선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범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범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 경찰은 소년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더라도 경미한 사건으로 검찰 송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방(訓放), 즉결심판청구 등을 하고 있음(소년업무규칙안 제21조).

11)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사건 여부의 1차적인 판단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됨(검사선주의주의, 檢事先議主義).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②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므로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발견
 한 경찰서장에게 소년부에 송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경찰은 대상 소년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에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도 있음(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6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 심판은 조사와 심리의 절차를 거치게
 됨. 소년부는 송치받은 소년을 조사할 수 있고(제11조), 경찰의
 송치서와 조사보고를 고려하여 심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제19조, 제20조), 조사 시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 진단 등을
 활용할 수 있음(제12조).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③ 한편, 동법은 소년의 일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보호자나 학교의 장 등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위한 소년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조제3항).

- 이때 통고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는 범죄소년도 포함됨.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보호자 등의 소년부 통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년부의 조사 및 심리 절차는 앞에서 본 경찰서장 송치의 경우와 유사함.

다만, 보호자 등의 소년부 통고 시에는 경찰서 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소년부에서 조사하여야 함(제11조제2항).

2. 소년부 조사·심리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소년부의 조사, 심리 시 고려사항으로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u>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u> ,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 ----- ----- -----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 -----.

- 소년부의 조사는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심리는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 제12조는 결국 심리 및 보호처분 여부 결정에 경찰관서의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경찰은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조사하고 소년부에 송치하며(제4조 제2항), 범죄소년에 대하여도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소년부에서도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19조·제20조에 따르면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에는 송치서를 고려하여야 하고 송치서에는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담은 참고자료가 첨부되므로(제5조), 현재에도 소년부의 판단에는 경찰 조사결과 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¹³⁾

- 소년업무표준규칙안에 따르면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여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 경우 사건을 검찰·법원에 송치할 때 해당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야 함(동 규칙안 제16조제4항).¹⁴⁾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 · 성명 ·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3)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경찰서장의 송치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가 소년부로 전달되며, 범죄소년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검찰 송치 시 관계 서류 등이 검사에게 송부되므로 「소년법」 제5조, 「소년심판규칙」 제7조에 따라 검사의 송치서에 첨부되는 그 밖의 참고자료로 소년부에 전달될 수 있음.

14)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소년의 선도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자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의 자료표를 참고하여 선도프로그램 연계,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하고, 검찰·법원 송치시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해당 소년 처우 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소년사건의 심판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소년사건 절차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년부 송치·통고 전의 조사·수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결과를 반영하려면 경찰 조사의 근거에 대하여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에 대하여 각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현행법 제12조 중 ‘전문가의 진단’은 소년 및 보호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경력 등 기본적 사항, 소년의 심신상태·교우관계·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감독 상황과 보호능력, 재비행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은 ‘전문가의 진단’과 성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이 추가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안 제12조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경찰활동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년경찰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법원 소년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임.

3.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 안 제49조의4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4(전문가의 의견 조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이 요구됨.¹⁵⁾

따라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됨.

15) 「소년법」의 이러한 특성을 실질주의, 과학주의라고 하는데, 소년보호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요구됨.

○ 실제 경찰에서는 이미 ①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② 선도심사위원회, ③ 선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사대상 소년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¹⁶⁾

①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는 소년범 조사에 심리전문가인 범죄심리사를 참여시켜, 비행촉발요인과 인성을 심층분석하는 제도로, 그 결과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됨(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6조).¹⁷⁾¹⁸⁾

②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 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가해 소년에 대한 훈방·즉결심판청구 등 처분 여부, 가해·피해 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의료·법률·상담 등 지원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는 제도임(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7조).¹⁹⁾²⁰⁾

16) 이하의 내용은 경찰청, 2023 경찰백서 (2023), 111-114를 요약한 것임.

17)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서장은 범죄심리사 등 청소년비행연구 및 선도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가를 선정한다.

③ · ④ (생략)

18) 2022년 기준 전체 소년범 61,220명 중 22.8%에 이르는 13,965명에 대한 조사에서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졌음.

19)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7조(선도심사위원회의 설치)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의 처우 및 선도 방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선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 2022년 동안 선도심사위원회의 처분결정을 통하여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된 인원은 1,802명임.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평균
전체	1,586	1,468	1,802	1,619
훈방	126	163	174	154
즉결심판청구	1,460	1,305	1,628	1,464

- ③ 선도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전문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임(소년 업무표준규칙안 제22조).²¹⁾

21)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22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선도프로그램은 비행소년 및 학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당 소년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선도프로그램은 인성교육, 심리치료,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하고, 대상 소년의 연령·죄종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선도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이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 시 전문가 활용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안 제49조의4는 긍정적으로 보임.

- 소년법에 대한 훈방 등 경찰 단계의 선도에 대하여는 ‘회복적 사법’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권고도 이루어진 바 있음.²²⁾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8차 권고안(2021. 4. 23.) >

권 고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
□ 기본방침 ◦ 낙인 등 부정적 효과 방지를 위해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을 적극 활용 중이며, 회복적 사법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 ◦ 죄질이 가벼운 소년법에 대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처분 및 지원 등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통해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 가. 현행 경찰 다이버전은 경찰서별로 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의위원회를 통해 3가지(훈방, 즉결심판, 입건) 형태로 처분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로 형평성 및 경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됨 나. 「소년법」을 개정, 경찰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이버전 유형을 다양화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낙인 방지 등 소년사법적 취지를 실현할 것 □ 기대효과 ◦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을 활성화할 경우, 죄질이 경미한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음	

22) 같은 취지로,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경찰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3. 3.), 81-83 등.

- 다만, 현행법은 제3장(제48조~제67조)에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부터 법원의 심판과 집행까지에서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 제3장(형사사건)의 내용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1절 통칙	제48조	준거법례	제2절 심판	제56조	조사의 위촉
	제49조	검사의 송치		제57조	심리의 분리
	제49조의2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58조	심리의 방침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0조	법원의 송치		제60조	부정기형
	제51조	이송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처리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63조	징역·금고의 집행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제65조	가석방
		-		제66조	가석방 기간의 종료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따라서 절차적으로 이에 선행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근거는 제49조의 앞에 두거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전문가 활용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²³⁾

23) 소년업무표준규칙안 제16조는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인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49조의4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소년사건 수사 및 처분 시 전문성을 향상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찬성한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행법에도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등 여러 조사절차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기존 조사와 중복될 뿐 아니라 절차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